

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웅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3월 28일

발 의 자 : 최웅식, 박순규, 홍성룡, 임종국,  
이병도, 우형찬, 김상훈, 전석기,  
김화숙, 성흠제, 이영실, 권영희,  
이광호 의원 (13명)

## 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2018.12.4.)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.  
(안 제13조제3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은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13조(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


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

예산분석관      이정수

☎ 02-2180-7942

e-mail : [intezer@seoul.go.kr](mailto:intezer@seoul.go.kr)